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259

발의연월일: 2021. 4. 1.

발 의 자:임호선·김병욱·김승원

김주영 · 김한정 · 박영순

박완주 · 오영환 · 윤준병

이규민 · 이병훈 · 이용우

장경태 · 한병도 · 홍기원

홍성국・황운하・박 정

(18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이 호흡 조사나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구체적인 측정 방법이나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한편, 경찰공무원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이므로,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법과절차 등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경찰청의 내부 지침으로 측정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음.

이에 음주측정의 방법이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식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(안 제44조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,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	제44조(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
전 금지) ① ~ ④ (생 략)	전 금지) ① ~ ④ (현행과 같
	<u></u> 이
<u> <신 설></u>	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
	정의 방법, 절차 등 필요한 사
	항은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한다.